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종합감사 결과보고

가. 감사개요

■ 감사기간 : 2013. 3. 18. ~ 3. 29. (10일간)

■ 감사 반: ◇◇◇ 서기관 등 5명 (실지감사)

■ 감사내용

○ 2010년 ~ 2013년 현재까지 기관 및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

나. 감사결과

(단위 : 천 원, 건)

합계		신분상 조치		재정상 조치		행정상 조치					모범	현지	
		1	건단 8 크기		1788 32N		시정	주의	개선	권고	통보	사례	조치
건수	금액	인원	건수	인원	건수	금액	건수						
12	_		_		_	_	2	3	4	1	1	1	_

※ 첨부서류: 감사처분 요구내용 1부.

<u>감사처분 요구내용</u> (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)

연번	7	디 적	내 :	<u> </u>		조 치 사 항
1	o 정산지연·교·	육기자재 미관리	등 보조사업	관리 미흡	0	주의요구
	- 진흥원은 201 사업에 대한 체육관광부(© 사업에 대해 - 예술강사용 5 있으나, 교육 낭비 우려 - 규정상 반납하 ※ 예금이자 집		보조사업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진흥원과 정산확정을 지연한 ○○○○○ 에 '기관주의'			
	* MIDVIN H	87 . 2011년 74	5선 년/ 2012년	120선 년		
2	 ○ 보조금 지원 사업 관리시스템 개선 필요 -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공모(2012년 843건), 심사자료 작성, 보조금 정산 및 통계관리 등 보조금 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여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처리 ※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온라인 전산시스템 구축·운용 					
3	o 연구용역 사·	업 운영·관리 기	l 선		0	개선요구
	- 진흥원은 최근 3년간 총 101건의 연구용역을 부서별 산발적으로 추진하였고, 연구용역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않고 있음					
	-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연구과제 및 연구자를 합리적으로 선정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체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필요					
	주신야기 위 여					
	구 분	2010년	2011년	2012년		
	건 수	20건	38건	43건		
	금 액	873,100	1,251,800	1,543,850		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4	ㅇ 보조금 회계감수 업체 선정 및 감수료 집행방법 개선	ㅇ 개선요구
	- 보조금 정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수 대행업체는 대행건수 (297건, 2011~2012) 수수료 규모(32백만 원~55백만 원) 등을 감안,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임의로 특정 회계법인을 선정	감수 업체를 선정하고,
	- 또한, 회계감수에 따른 수수료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회계 감수료 단가를 참고하여 임의로 정하는 등 진흥원의「계약 사무관리규칙」을 위반	
5	ㅇ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	ㅇ 주의요구 및 통보
	- 보조사업의 예산은 용도별 세목에 맞추어 세부적으로 편성· 집행하여야 하는데 진흥원은 일반수용비 세목에 기타진행비 등으로 일괄 편성 후 집행('11년 총 336건 836,176천 원) 하고 있어 예산집행 부실 우려	관련 법령·지침 준수
	- 보조사업 내용 등을 변경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진흥원 임의로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(2011년, 273,273천 원)	
	· 민간경상보조로 집행해야 할 □□□□□□ 예술 강사비 지원을 일반수용비로 집행(256,553천 원)	
	· '예술꽃씨앗 어울림 뜨락행사' 기념품 제작비(16,720천 원)를 사업이 다른 '학교예술강사지원 사업'교육기자재 예산으로 변칙 집행	
6	ㅇ 자체 수익금 관리 부적정	ㅇ 시정·주의요구
	- 출판관련 인세, 각종 컨설팅 및 평가 수당 등 잡수익 36,770 천 원을 수입조치 않고 별도 계좌로 장기간 보관하고 있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	
	- '08년 우리 부 종합감사 시, 미계상된 수익금에 대해 예산에 계상하도록 지적(2,906천 원)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조치 함	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7	 ○ 직원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- 2011년 하반기 직원 채용계획에 5급 직원 9명을 선발키로 했으나,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5급 응시자 서류전형 합격자 중에서 3급 1명을 추가 채용(2012.12.31. 퇴직) 하는 등 특혜 선발 -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시, 「인사규칙」에 따라 인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상위 순위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, 동 규칙을 무시하고 먼저 입사한 직원을 선발 ※ 사례: 계약직 4명 중 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인사평가 결과 3위인 직원을 먼저 입사했다는 이유로 선발 (2012.10.4.) 	
8	 ○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 부적정 - 공무여행 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하지 않거나(5명, 9건), 항공사 회원에 가입하지 않아 마일리지를 미적립(2010~2012년/16명, 41건)하여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 - 공무국외여행 시 사전심사 및 허가절차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이나 내부지침 없이 공무국외여행을 수행(2010~2012년/31건)하여 불필요한 출장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가 곤란 	및 적립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토록 시정조치 - 공무국외여행 사전 심사
9	 ○ 계약사무관리규칙 개정 필요 「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」(기획재정부훈령 제127호)에는 국가, 지자체 대상으로만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데, 진흥원 계약사무관리규칙에는 공공단체와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, 2012년에 ◎◎미술관 및 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□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 국가계약법에는 계약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진흥원 규칙에는 산출내역서 첨부 규정이 없으며, 국가계약법상 '협상에 의한 계약'의 입찰공고 기간도 10일이상인데 진흥원은 5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	계약법 및 기타공공 기관 계약사무 운영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10	O 행사대행 용역 원가산정 부적정 및 사후 정산 불이행 - 행사대행 용역 계약 체결 시 부정확한 원가를 산정하고, 이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산없이 계약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있어 예산 낭비 우려(행사대행 계약 59건, 5,348백만 원 지출) ▶사례1: 2011 창의예술캠프운영 사업(287백만 원)의 원가 산정서인건비는 109,023천 원, 계약 내역서인건비는 32,929 천 원원자례2: 2011년 및 2012년에 시행한 「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교육학 원격연수」는 사업내용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,2011년 65,147천 원,2012년 33,658천 원으로 원가 산정※ 2010~2013년간 원가산정기관에 145건 의뢰, 145백만 원 지출	원가산정을 적정하게 하고, 계약은 사후 정산
11	 직원 퇴직급여충당금 관리방안 강구 퇴직급여충당금 546,891천 원(2012년 말 현재)을 보통예금 으로 관리하고 있어 운용 이자수익이 미흡함 	 개선요구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정기예금 예치 등 수익률(이율) 제고 방안 강구
12	 ○ 효율적인 문화예술교육강사 지원 및 평가를 위한 온라인시스템 구축・운영 - 약 20,000여명의 예술강사, 문화예술교육 전문가, 12,000여개의학교, 900여개의 각종시설(노인시설, 복지관, 장애시설 등)등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관련 DB를 구축하였고, - 강사 활동 지원 및 관리, 온라인교육 관리, 온라인 평가 및증명서 발급 등을 동 시스템으로 통합 처리함으로써 인력·예산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제고 - 16개 시·도의 광역센터, 국악주관단체, 교육기관, 강사 등사업에 참여하는 관계자 총 40,000여명의 업무 접근성 및편의성 제고에도 기여 	- 문화예술교육과는 진